



환경관련질의응답

대기배출시설 산처리시설 여부

Q

당사의 설비 중 아연을 원료로 사출성형 작업을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사출성형기를 가동 시 아연제품이 금형에 잘 탈착시키기 위하여 이형제를 뿐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 사출작업이 진행되면 금형내부에 미세한 아연칩이 부착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염산조에 넣어 염산과 반응시켜 칩을 제거합니다. 이때 염산조에 반응시킬 때 침, 기계가동 시 금형 부착되어 있는 이형제(기름성분)도 일부 함께 제거가 됩니다.

이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을 산처리시설, 틸지시설 중 어느 곳에 해당되는지 답변 바랍니다.(염산반응작업의 주 목적은 칩 제거하기 위함.)

A

하나의 시설에서 산처리와 탈지를 병행한다면 산처리시설 또는 탈지시설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의 제1호 나목 1)에 따라 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2가지 이상의 기능을 동시에 병행하는 시설에 대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시에 주용도에 따라 신고하면 될 것이며 허가신청서(또는 신고서)상에 주용도를 표기하고 ()안에 “부용도”를 병행하여 표기하면 될 것입니다.

예) 산처리시설(탈지) 또는 탈지시설(산처리)

방치폐기물보증보험 가입 여부

Q

보증보험 가입에 관하여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농장(폐기물재활용업소)에서 식물성잔재물(비지) 받아 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 필히 폐기물 재활용업소는 방치폐기물공제조합에 가입(폐기물관리법40조) 해야 하나요?

나) 방치폐기물공제조합에서 보증금 산정시 보관량으로 산정한다고 하는데, 보관량이 없어도 방치폐기물공제조합에 가입하여야 하나요?

A

사업장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신고자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조치를 하여야 하나, 보관 장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공동운영기구에서 개별로 처리 가능한지

Q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하여 폐기물을 처리하던 배출업체가 다른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처리증명을 득한 후 개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이때 공동운영기구에서 탈퇴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동운영기구에 가입된 채, 개별로 처리가 가능한지요?

A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의무는 배출자에게 있으므로 공동운영기구에 가입한 배출자가 타 업체에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운영기구 탈퇴의사를 밝힌 후 폐기물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업체 변경증명을 받아 위탁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폐석면 처리방법

Q

석면 브레이크 처리방법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석면 브레이크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처리하고자 하는 석면 브레이크는 완제품이며, 비산의 우려가 없는 고형화된 상태입니다.

발생량은 약 2톤입니다.

2008년 개정법률에 따르면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에 해당된다고 하던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되는지요?(개정되기 전의 폐기물관리법에서는 비산의 우려가 없고, 고형화된 상태의 폐석면은 일반폐기물에 해당되어 일반폐기물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폐석면 처리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신고를 한다면 시청에 하는지 환경청에 해야 하는지요?

A

가. 2007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중 별표1 제7호의 개정규정과 2007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같은 법 시행규칙중 제31조제1항제3호, 별표5 제3호다목4) 라목2)카, 같은 표 제4호가목1) 나목3) 다목2)바) 및 별표9 제2호나목2)자)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시행일은 2008년 7월 1일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고형화되어 있어 비산될 우려가 없는 석면함유폐기물의 경우 사업장일반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으나, 비산여부와 상관없이 석면이 1% 이상 함유한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 아울러 석면함유 건축물의 해체 및 제거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관할지역내 노동관서로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ATER BOOTH의 수막판을 이용한 수세식 시설을 세정식집 진시설로 인정 여부

Q

도장시설 중 건식과 습식의 방식이 있는데 WATER BOOTH(수세식 도장)의 순환수를 오버 플로우하여 수막판에 흐르는 동시에 스프레이 파이프를 통해 수막실내에 노즐 분사하여 분무공기는 세정되어 하부수조에 고이고 연속 순환 사용됩니다. 이 설비 중 수막실 분사노즐을 이용한 세정부위를 세정식집진시설(WET SCRUBBER)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의 제4호 세정집진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액적, 액막, 기포 등을 이용하여 함진 배기가스를 세정, 입자 상호간의 응집을 촉진시켜 먼지를 분리시키는 장치(충돌과 차단의 원리로 물을 뿌려 먼지를 제거하는 장치)”로서 주로 먼지를 제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 및 제28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계·시공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질의하신 시설의 방지시설(세정집진시설) 인정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농도, 유량 등을 산정한 자료와 방지시설의 처리계통도 및 처리용량, 효율 등을 산출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기관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폐목(전선용 Drum) 처리 관련

Q

당사는 제조업체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배출자입니다.

원형 그대로 재사용이 가능한 전선용 Drum을 폐기물재활용 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일반인에게 전선용 Drum으로서 재사용한다는 전제하에 무상 또는 매각하여도 되는지?

이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의 관리 항목에서 제외(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에 미기록) 되는 것인지 여부 답변 바랍니다.

A

전선용DRUM(나무) 공급자가 전량 회수하여 수리·수선 없이 동일한 용도로 재사용하는 경우 중고품으로 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배출자가 더 이상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여 일반인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폐기물로서 재활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기준

Q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

갖추어야 할 장비 중에 1. 밀폐식운반차량, 2.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3. 기계식상차장치가 붙여진 차량이란 말이 있는데 상기 1, 2, 3번 차량의 개념이 무엇인지?

밀폐식운반차량에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도 포함되는지요?

기계식상차장치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요?

A

폐기물수집·운반업의 장비 중 밀폐식 운반차량이란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외부와 샐틈이 없이 막혀있거나 닫혀있는 구조를 가진 차량을 말합니다. 적재함에 덮개(뒷부분이 열리는 구조인 경우는 뒷문)가 설치된 차량으로서 덮개가 닫혀있는 상태에서 적재함의 폐기물이 외부로 비산이나 유출우려가 없다면 밀폐식 차량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이란 적재한 폐기물을 압축 또는 압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밀폐식 운반차량과는 다릅니다. 또한 기계식 상차장치란 폐기물을 상차할 수 있는 기계장비를 말합니다.

변경신고대상인지, 설치신고대상인지

Q

만약에 기존에 성형시설 5대를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로 신고를 한 후 사업장을 영위하던 중, 성형시설이 추가되어 역시 방지시설설치의무면제를 받고자 할 경우, 배출구 증설로 보아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아니면, 기존의 배출시설과 동일한 시설이 증가되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까?

A

배출시설 규모의 합계나 누계는 배출구별로 산정하며 기존시설과 증설시설이 같은 배출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변경신고(허가)를 하면 될 것이나, 별도의 배출구를 설치한다면 설치신고(허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사육시설 설계 관련

Q

개사육시설에서 발생되는 개분뇨처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한우는 통상 사육면적당 15%기준으로 퇴비사 용량을 산정(톱밥 및 개분뇨 함수율고려 산정)하나 개사육시설에 따른 산정기준은 환경부 표준설계도서에 없습니다.

A

2007.9.28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개” 사육시설 중 축사 면적이 $60m^3$ 이상 시설은 사육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출시설의 신고를 하고, 신고를 한 자는 2009.9.27일까지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계·시공업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시공을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的 분뇨발생량중 분은 1.2kg/두.일, 노는 2.2kg/두.일(세정수제외)(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관리개선 방안 연구(환경부, 2003))임을 알려드립니다. ☺